

의안번호	2211295
의 퇴 인	김성원의원
회 답 일	2025.8.20.
추계번호	25D3598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종합안전대책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 (위험평가 및 고지)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국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호시설과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9조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대표, 전문가,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운영하여야 함(제1항) 협력체계는 예방·대응·복구·조사·보상 등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함(제2항)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 (응급주거 및 생활지원)	피해자에게 임시거주지 및 응급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생활지원을 신속히 실시함(제1항)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5조 (긴급생계지원금)	국가는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제1항)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6조 (피해보상 및 배상)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을 실시함(제1항)	의무규정
8	안 제17조 (정신적 피해 지원)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정신건강 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제1항) 지원시기에 대한 기준은 피해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함(제2항)	의무규정
9	안 제18조 (주거 및 생활환경 복구)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개보수, 신축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종합적인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함	의무규정
10	안 제19조(적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국가는 적대세력의 무력 도발, 테러, 사이버 공격, 침투 등 적대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지원을 실시함(제1항) 특별지원에는 생계비, 의료비, 장례비, 재건비, 심리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일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포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방부장관은 특별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특별법 또는 관련 지침에 따른 추가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제3항)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11	안 제20조 (지역경제 회복 및 산업지원)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기업 유치, 산업시설 설치, 일자리 창출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21조(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	국가는 피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주거지 및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함	의무규정
13	안 제22조(민군상생 발전계획 수립)	국방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민군상생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함(제1항)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기반시설 확충, 주민 복지사업, 공동체 회복 등을 포함(제2항)	의무규정
14	안 제23조(미활용 군용지 활용)	국방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민군상생발전 및 지역재건을 위하여 수익매각, 교환,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6조 (종합안전대책의 수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7조 (위험평가 및 고지)	
3	안 제8조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 미대상: 타법에 의해 기수행 중임
4	안 제9조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3조 (응급주거 및 생활지원)	• 미대상: 타법에 의해 기수행 중임
6	안 제15조 (긴급생계지원금)	
7	안 제16조 (피해보상 및 배상)	
8	안 제17조 (정신적 피해 지원)	• 미대상: 기 편성 예산으로 수행 가능
9	안 제18조 (주거 및 생활환경 복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9조(적 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 미대상: 타법에 의해 기수행 중임
11	안 제20조 (지역경제 회복 및 산업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2	안 제21조(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	
13	안 제22조(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14	안 제23조(미활용 군용지 활용)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군사시설, 군사훈련지역 및 적대세력의 무력도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라 종합안전대책 수립,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응급주거 및 생활지원, 긴급생계지원금, 피해보상 및 배상, 정신적 피해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 복구, 적 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 지역경제 회복 및 사업지원, 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미활용 군 용지 활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의 위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종합안전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안 제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안전대책 수립 관련 구체적인 계획 미흡으로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국방부는 현재 훈련시행 1~2주 전에 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군사훈련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사격장과 훈련장은 훈련대상 무기체계와 훈련내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훈련장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3년 전에 미리 수립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
 - 사격장 위험성은 사격훈련 무기체계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폭발 규모 등에 영향이 있고, 그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격하는 무기체계는 여건에 따라 사격훈련장 장소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훈련장은 사격훈련 또는 기동훈련 등 훈련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폭발·소음·진동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전에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
- 방호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안 제8조)와 관련하여, 정부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2025년까지 민방위 대피시설 총 250개(인천 118, 경기 80, 강원 52)(예산편성 기준¹⁾)를 설치 중임
 - 2025년 8월 6일 기준 244개 대비시설이 준공완료 하였으며, 6개는 구축 중임

1)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사업(코드: 2643-304)에 67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 1] 정부지원 대피시설 현황(예산 편성 기준)

구 분		확 충 량(개소)		사업비(억원)				비 고 (주관부처)
				합계	국비	교부세	지방비	
합 계		250개소	(인천118, 경기80, 강원52)	1,595.4	948.9	105.7	540.8	
서해5도 (46개소)	'11년	42개소	(백령26,대청9,연평7)	530.0	424.0	20.0	86.0	안전행정부
	'17년	1개소	(연평1)	20.0	16.0		4.0	행정안전부
	'18년	1개소	(백령1)	20.0	16.0		4.0	
	'19년	1개소	(백령1)	20.0	16.0		4.0	
	'20년	1개소	(백령1)	8.0	6.4		1.6	
접경지역 (204개소)	'11년	56개소	(인천6,경기32,강원18)	188.2	65.9	65.9	56.4	소방방재청
	'12년	17개소	(인천4,경기8,강원5)	76.8	38.4	-	38.4	
	'13년	21개소	(인천10,경기9,강원2)	76.8	38.4	-	38.4	
	'14년	19개소	(인천10,경기6,강원3)	76.8	38.4	-	38.4	
	'15년	13개소	(인천10,경기2,강원1)	76.8	38.4	-	38.4	국민안전처
	'16년	22개소	(인천5,경기10,강원7)	132.0	66.0	19.8	46.2	
	'17년	12개소	(인천5,경기2,강원5)	76.8	38.4		38.4	행정안전부
	'18년	12개소	(인천6,경기2,강원4)	76.8	38.4		38.4	
	'19년	10개소	(인천4,경기2,강원4)	64.0	32.0		32.0	
	'20년	5개소	(인천2,경기2,강원1)	32.0	16.0		16.0	
	'21년	5개소	(인천3,경기2)	32.0	16.0		16.0	
	'22년	3개소	(인천3)	19.2	9.6		9.6	
	'23년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19.2	9.6		9.6	
	'24년	2개소	(인천1, 경기1)	12.8	6.4		6.4	
	'25년	4개소	(인천2, 경기1, 강원1)	37.2	18.6		18.6	

자료: 행정안전부

-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과 관련하여, 주민대표 참여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간담회의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구성단위 및 인원, 회의개최횟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민관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최근 5년간 제정안에 따른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025년 3월 6일 승진훈련장에서의 전투기오폭사고가 유일한 사례로, 사고의 발생빈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 사고발생 시 민관군협의체를 설치·운영할 경우,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고의 발생빈도 및 회의개최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

[표 2] 최근 5년간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의 사고발생 현황

연번	장소	사고일시	사고내용	피해현황	피해보상현황
1	승진훈련장 (공지합동)	2025. 3.6.	전투기 오폭	인근 주민 등 부상자 9명 발생 및 주택 유리창 등 일부 파손	부상자 치료 및 손해사정 진행 중

자료: 국방부

- 응급주거지원 및 생활지원(안 제13조), 긴급생활지원금(안 제15조) 및 피해 보상 및 배상(안 제16조)의 경우, 「국가배상법」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지원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신적 피해 지원(안 제17조)의 경우, 기 운영되고 있는 군병원의 진료·치료 및 현행 예산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방부는 현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검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 병원 진료에 필요한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또한, 군인, 군무원 등 군인력에 대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2025년 예산 339억 3,100만원),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2025년 예산 6억원)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

[표 3] 최근 5년간 군인력 상담실적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97,282	310,600	333,325	372,523	373,247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384	1,020	2,744	5,328	6,801

자료: 국방부

2)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방부의 배상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연도별)	신 청		처 리				진 행 (건)
	건수 (건)	금액(백만원)	계 (건)	인용		기각 (건)	
				건수 (건)	금액 (백만원)		
2020	3,180	3,364,703	1,690	1,588	3,063	102	1,490
2021	2,167	13,240,615	1,425	1,309	5,454	116	742
2022	1,733	963,309	1,064	874	4,145	190	669
2023	1,309	48,432	664	554	2,651	110	645
2024	1,023	143,641	710	470	1,488	240	313

주: 총 예산 관련, 국가배상금은 일반 배상금 예산(국가배상 소송 포함으로 연 171억)에서 지급되는데, 실 지급액은 연 평균 12억 원임

자료: 국방부

- 적 도발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19조)의 경우, 「민방위기본법」³⁾ 및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금 세부지침”(2025.8.6.)에 따라 시행 중임
 - 2024년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대남 소음방송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예산을 협의 중임
- 지역경제 회복 및 산업지원(안 제20조), 주민 이주 지원 및 정착(안 제21조),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안 제22조), 미활용 군용지 활용(안 제23조)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향후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의 사고피해 발생빈도 및 피해자 규모 및 지원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가 어려움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3)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